

1. 개정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원가 대상물자에 대한 개념 명확화

나. 개산계약 가격결정 기준 정비

다. 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0.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시행령 제61조의6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15호 가목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

나. 법 3조 15호 나목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 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 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다. 법 제3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라. 법 제3조 제15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제4조의2의 제목 “(필수수리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를 “(전력화지원요

소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2조제1호 가목(연구 또는 시제품) 및 다목(방위산업물자)을 제외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개산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61조의 5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가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시행령 제61조의6에 따라 방위사업계약</u> -----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 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정의)	-----	----- -----. 1. ----- ----- -----.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15호 가목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 나. 법 3조 15호 나목 무기체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이하 “필수 수리부속품”이라 한다)

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

2. ~ 20. (생략)

제4조의2(필수수리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방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필수수리부속품 및 필수정비

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다. 법 제3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라. 법 제3조 제15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2. ~ 20.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제2조제1호 가목(연구 또는 시제품) 및 다목(방위산업물자)을 제외한 -----

-----.

<삭제>

<u>관련 장비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u> <u>2. 필수정비 용역(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물자에 대한 정비 용역은 제외한다)</u> <u>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 계산서와 견적서 등 필요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u>	<u><삭 제></u> <u>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개산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61조의 5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u> <u>1. 견적가격</u> <u>2.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가격</u>
---	---